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3, Number 3, September, 2011: pp. 353~375
통상정보연구 제13권 3호 (2011년 9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1. 8. 18
심사(수정)일 : 2011. 9. 5
게재확정일자 : 2011. 9. 17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A Study o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이상옥(Sang-Ok Lee)
건국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동향
Ⅳ.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Ⅴ.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제어 : 전략물자, 수출통제, 비확산체제, 국제안전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Ⅰ. 서 론

COCOM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969년의 핵 비확산 조약 (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 (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 (NSG), 1985년의 호주그룹 (AG, 생화학 무기통제),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창설되었으며, 한편, 1990년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면서 공산권국가에 대하여 통제품목의 공급을 차단하던 COCOM은 더 이상 존속되어야 할 근거가 없어지자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 WA)이 창설되었다.

그동안 수출통제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였다. 즉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 개념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 등을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 (Non - 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 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 한다.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통제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 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목(Dual Use item) 까지도 포함 되게 되었다.

또한 수출통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수출허가 뿐만 아니라 경유, 환적, 중개 등 통제품목의 국제적인 이동과 관련된 모든 경로로 통제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통제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우려사용자들은 이제 노출 가능성이 큰 단순한 경로 대신에 복잡하고 우회적인 경로를 택한다.

다자간수출통제체재의 통제품목에는 NSG, MTCR, AG, WA 4개 체제의 통제리스트 외에 CWC사무국(CWC-Opec)이 정한 것을 포함한다.[1)]

그러나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서는 통제품목을 특정 국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WMD를 개발, 생산, 사용하는 용도와 분쟁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전투, 테러용도로 조달하려는 국가나 조직,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통제객체가 공산권 국가에서 우려사용자로 변하였고, 이행주체인 각국 정부나 기업은 통제할 객체를 식별하기가 어려워 졌다. 용도를 숨기고 위장한 우려사용자를 탐지,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9·11 테러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1) Michael Beck, "Reforming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7, No. 2, Summer 2000, pp.91-103.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으로 부상하게 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테러이후 국제사회는 수출통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고 있다.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수단이다.

Ⅱ. 선행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으로 COCOM이 신설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가 시작되었다.

그 후 베를린장벽이 철거되면서 공산권국가에 대하여 통제품목의 공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던 COCOM은 더 이상 존속되어야 할 근거가 없어지므로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 : WA)이 설립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되어 130만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다.[3)] 또한 1960년 후반 베트남전에서 미군에 의한 대량의 고엽제가 사용되어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1972년 생물무기 금지협약(Biological and Toxins Weapons Convention)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연구한 학자로는 Gorden M. burk et al(1991), Michael Beck(2000), 淺田正彦(2004), Joseph Cirincione(2005)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중의 하나는 WMD와 미사일의 확산이다. 국제비확산체제는 조약, 협정, 협약, 국제기구 및 이행 검증수단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연구한 학자로는 Barry kellman(2001), Nathan E·Bush and Daniel H·Joyner(2009) 등이 있다.

대량살상무기란 짧은 기간에 대량의 사람과 건물에 대한 살상력과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화학무기 및 생물무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화학무기(Chemical Weapons)는 일반적으로 신경작용제로서 제조하기 쉬운 대량살상무기이다.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s) 작용제(agents)는

2) 조성균, "무역대국의 선결 과제, 수출통제 제도이행!: 산업자원부 200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안보통상연구, 제1권 1호, 2007. 3, pp.145-146.

3) Gordon M. Burk et al. *International Handbook on Chemical Weapons Proliferation,* Greenwood Press, 1991, pp.540-541.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격대상을 감염시키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인간 또는 동식물을 살상, 고사, 질병,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태를 유발한다. 이의 폐허를 연구한 학자로는 Randall Forsberg(1999), Barry kellman(1994), Jack H·Mecall(1992) 등이 있다.

1974년 쟁거위원회는 통제리스트 품목을 핵비확산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핵비보유국(NNWS)에 수출시 특정요건을 부과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만 수출을 허용하였다. 학자로는 Tadeusz Strulak(2000), Daniel H·Joyner(2005) 등이 있다.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은 인도가 캐나다에서 도입한 연구용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실험 실시를 계기로 핵관련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핵무기의 비확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6년 런던에서 탄생했으며 일명 런던클럽(London Club)이라고도 한다.

이의 학자는 Fritz W·Schmidt(1994), Malcolm Dando(2002), Paul Kerr(2003) 등이 있다.

바세나르체제(WA)는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이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재래식무기의 과잉축적(destablishing accumulation)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제안보와 안정을 도모하고,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물자 및 기술이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Philip H·Oettinger(1994), Kenneth A·Dursht(1997), Harald Muller and Mitchell Reiss(1995), Jofi Joseph(2004) 등이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집단 또는 WMD 등이 관련된 위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범죄시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출통제 법령을 제정하며, 국경내의 모든 민간 품목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동향

9.11 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규범화 되고 있다. UN은 안보리결의 1540호를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들에게 WMD 개발 · 제조와 관련된 모든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의무화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뿐 만 아니라 통관, 환적, 중개, 재수출, 자금지원, 운송, 최종 사용자, 기술의 무형이전(ITT)을 통제하도록 장려하고 관련법제도 도입 및 이행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 이란 등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고, 핵관련 민간품목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국제적인 핵무기 감축, 안보리결의 1540호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 UN 안보리결의 1887호가 채택되기도 하였다.[4)]

1. 미국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대량 살상무기(WMD)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 미국 수출통제의 특징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출 및 미국 밖에서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이 일정비율(테러지원국은 10%, 나머지 모든 국가는 25%)을 초과하여 포함된 외국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미국산 제조기술로 만든 외국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통제하는 것이다. 전략기술의 경우는 무형이전도 수출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메일, 팩스, 전화, 구두전달 등에 의한 기술이전을 철저히 통제한다. 또한 미국기술을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또는 해외에서 제3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허가대상이다.

미국은 WMD 비확산, 국가안보, 공급부족, UN제재 이행, 테러방지, 지역안정, 범죄퇴치 등의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며 통제대상은 자국통제리스트(CCL) 상의 품목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 등 리스트에 없는 품목(EAR99)의 수출도 통제한다. 통제는 품목별로 핵무기,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확산, 테러지원 등의 통제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국가별로 통제목적에 해당되면 허가요건을 부여하여 해당국가에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1987년 발생한 도시바사건[5)]을 계기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및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수출과 거주자

4) 전략물자관리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2009, pp.3-162. ; 전략물자관리원, “2010 연례보고서”, 2010, pp.57-91.
5) 도시바가 82·83년에 저소음 잠수함용 부품제작에 쓰일 수 있는 선반기계 4대를 구소련에 불법 수출한 사건이 발생, 나카소네 수상이 87년 대미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사바 도시바 회장은 사임한 사건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비거주자에 기술제공 시 사전에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기 및 관련기술은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통제하고 군민 겸용의 이중용도품목(물품, 기술)은 조약 및 국제체제의 합의에 따라 통제한다.

일본은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정책을 경제산업성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다른 국가의 제도에 비해 간소한 절차[6], 정책의 일관성 및 정보공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최근 전략물자의 중개, 환적통제 및 무형기술 이전 통제를 강화하고, 상황허가 적용 대상을 종래의 WMD와 미사일에서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의 용도로 확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였다.[7]

정부의 후원과 기업의 출연으로 1989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있다. 이는 수출관리 상담 및 컨설팅, 자율수출관리 지원, 세미나 등 교육홍보, 조사연구를 통한 대정부 정책건의와 국제협력 등 기업의 수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장려하되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도 자율준수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는 이행과 집행 등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 EU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술 선진국들은 고도 기술상품의 주요수출국으로서 각종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창설 회원국들이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국제 통제기준을 자국의 법령에 반영, 시행하고 있다.

최근 EU 통합에 따라 수출통제 기준으로 EU 단일기준을 마련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통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각국의 재량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995년 7월부터 유럽연합(EU)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제도를 시행, 15개 회원국 전체에 규제법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 규제는 모든 EU 국가의 수출통제 절차의 조화를 위한

6) 일본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엄격화에 대응하여,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5조를 개정('09.11.1, 시행). 기존에는 비거주자의 기술반출에 대해 허가 요건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본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운반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허가 대상의 무형기술이라면 허가를 받고 이전토록 했다.
(http://www.meti.go.jp/policy/anpo/kanri/top-page/gaitamehoukaisei.htm)

7) 재래식무기 및 관련 범용품 등의 국제적 수출관리체제 바세나르의 합의(2003)에 따라 일본은 재래식무기로 전용이 될 우려가 있는 32품목을 지정하여 보완적 수출관리조치를 시행(2008.11.1)하고 있다.
(http://www.meti.go.jp/policy/anpo/kanri/kankei-horei/kaisei/20_8_27/main.htm)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대로 구축하고 있다. EU 규제는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사회규칙으로 EU 위원회의 권한 하에서 역내시장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결국 역내에서 허가 없이 통제품목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수출허가 통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일시장내의 물리적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반면에 EU로부터 제3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공동절차를 설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절차의 실질적인 부문을, 정부 간 결정인 이사회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중용도 규제의 목적은 먼저 거의 모든 이중용도 제품거래를 포함, 단일유럽시장의 확대를 용이하게 하고 다음으로 대량파괴무기 및 정교한 재래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중국

중국은 과거 냉전시대 이후, 비확산 체제를 거부하고 미사일 및 관련 민감 기술 등을 여러 국가에 이전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시작으로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2004년 핵공급국그룹(NSG)에 잇따라 가입하면서 비확산 수출통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관련 법 규정을 수립하여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국제 교역규모 및 수출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 수출통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중국정부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급부상하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개정된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등을 살펴보면 UN 안보리결의안 1540호의 요구에 맞춰 통제 범위를 통과, 환적 등까지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집행의지는 향상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개방적인 무역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강력한 수출통제체제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 보유하고 있다. '03년 제정된 전략물자통제법(SGCA : Strategic Goods Control Act)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자간 수출통제협력에도 적극적이어서 '04년 4월에는 일본정부와 민감한 무기 불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맺었다. 또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고자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였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컨테이너안보구상(CSI)에 가입하였다. 이에 미국 세관원과 국경수비대 관리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싱가포르 당국과의 협력 하에 모든 미국행 화물을 선적 이전에 검색하고 조사하고 있다. '07년에는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통제리스트를 국제수출통제체제 기준에 맞추고 국제규범이 개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국내규정을 최신화 하였다.

위와 같이 싱가포르가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영해안보가 중계항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WMD 확산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도를 유지하고 자유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무역과 운송에 대한 국가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개항으로서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데에 수출통제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동남아 지역의 주요 수송 허브인 싱가포르가 WMD 불법무역 활로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WMD 관련 물품 혹은 최종사용자가 WMD 확산 기여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캐치올 규제[8]를 적용하여 통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통제제도를 수행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6. 홍콩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며, 아시아에서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입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며, 필요시 건강, 안전, 환경보호 및 밀수방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통제한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화학·생물무기 및 그 원료물질, 핵물질과 장비 및 WMD의 개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과 아울러 WMD의 개발 등에 관련된 제품의 최종용도를 통제한다.

8) Catch-all 제도란 수출국정부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무기개발 의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당해 수출품이 WMD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이 아닌 물자라도 수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물자의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콩은 환적·중계항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전략물자의 수출은 물론이고 수입도 수출과 동등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통과, 환적, 재수출, 최종용도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의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비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홍콩은 국제비확산 및 수출통제체제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국제비확산체제의 수출통제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통제리스트를 그대로 수용, 준수하고 있으며 UN안보리 결의 1540과 핵 ·미사일 확산국 및 금수국에 대한 UN안보리의 제재조치도 역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홍콩은 미국으로부터 허가면제 승인을 받아 수입된 전략물자가 중국으로 재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미국의 허가를 받아 홍콩으로 수입된 전략물자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홍콩으로 수입된 미국산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가 홍콩기업의 중국 본토 내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도 적용하는 등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의 역외적용을 잘 이행하고 있다. 홍콩은 이에 더하여 수시로 공고(Circular)를 통하여 미국산 전략물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미국 수출통제 정책 및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지도, 안내하고 있다.

7. 대만

대만은 1995년 7월부터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는 캐치올 통제를 시행하고 민감품목리스트(SCL)를 만들어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에서는 무역원활화계획의 일환으로 대만의 기업들이 수출입기업으로 등록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허가 문서를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미국과의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와 WMD 비확산 목적 달성을 위한 미국무부의 EXBS(U.S.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사업에도 대만 內 미국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의 자문 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출통제의 집행, 불법 기술 이전 그리고 선적에 관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일본, 미국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이 잘 정비된 국가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자국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대만은 자율준수체제를 도입 하였다.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Ⅳ.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약의 한계

1) 핵비확산조약의 한계

핵비확산조약(NPT)의 문제점을 들면 첫째는 조약의 불평등성이다. 핵비보유국(NNWS)은 핵무기 제조나 보유의 금지는 물론 IAEA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나 핵보유국(NWS)은 IAEA 사찰의무가 없으며 핵무기 폐기 등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도 아니다. 둘째,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NNWS 간의 불신 및 대립으로 핵개발이 확산되어 있고, 셋째, NNWS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비하여 NNWS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넷째,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한 핵확산 감시의 불충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는 NPT 당사국은 자국의 중대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탈퇴 3개월 전에 사전통보만으로 탈퇴할 수 있어 탈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NPT체제는 당사국에게 IAEA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우라늄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핵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획들하고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다음 NPT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억지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9]

2) 화학무기 금지조약의 한계

CWC는 통제대상 화학물질과 제조설비에 관한 신고·검증·협약준수 위반국에 대한 강제사찰·제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고가의 재래식 무기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핵무기와 비교하여 화학무기의 개발, 보유 등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당사국인 북한·이라크·시리아·이스라엘·이집트 등이 화학무기의 개발·보유를 계속 하면 인접국들도 개발·보유를 계속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들 국가의 서명·비준과 가입을 통한 보편성의 확보가 주요 과제이다.[10]

CWC가 강력한 검증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검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해당국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9) (株)東芝輸出管理部, “キャッチオール輸出管理の實現”, 日刊工業新聞社, 2005, pp.8-9.
10) (株)東芝輸出管理部, “キャッチオール輸出管理の實現”, 日刊工業新聞社, 2005, pp.19-20.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생물무기 금지조약의 한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또 NPT와 CWC와는 달리 협약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집행할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없다. 당사국의 불이행(Noncompliance) 문제가 있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청원하는 절차가 있지만 문제의 제기는 당사국이 해야 한다. 여기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은 CWC와 마찬가지로 주로 '유엔헌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4) 확산 우려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약 불참

국제비확산체제는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산우려국의 대부분이 비확산 조약이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비확산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탈퇴하였다. CWC는 시리아·이집트·북한·소말리아 및 앙골라 등 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인접국들도 개발, 보유를 계속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확산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정치적 문서인 '헤이그행동규범'(HCOC)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미사일 확산국가로 알려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인도, 파키스탄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5)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규제 결여

비확산체제의 무기관련 기술의 생산·보유·거래에 관한 모든 제한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 비국가행위자와 기업 등 민간 당사자에 대한 실체적인 제한이 없다. 물론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가국들이 개별적으로 국내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아직 수출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제도조차 없는 실정이다.[11]

NPT의 경우 제9조는 "모든 수령국으로"(any recipient whatsoever) 또는 모든 "이전국으로"(any transferor whatsoever) 부터의 이전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는 NPT당사국인 국가에만 부과되는데 이는 NPT가 국가들만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기 때문이다.[12]

민간 기업은 아직 국제조약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나 국제사회에서 그중요성이 증대

11) Nathan E. Busch and Daniel H. Joyner (eds.),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9, pp.180-181.

12) Joshua Masters, "Nuclear Proliferation: The Role and Regulation of Corporation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6, No. 3, November 2009, pp.349-350.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고 있다.[13]

2.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1) 다자체제의 비공식구조 및 제도적 결함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조약이 아니고 '신사협정' 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태생적 결함(Birth defect)을 갖고 있다.

또한 다자체제 참가국 간들에 수출통제 가이드 라인 및 통제리스트의 제정 등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시기와 이행범위에 차이가 크다. 그리고 어느 체제도 이행검증체제 및 위반 제재 등 강제수단이 없어 수출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14]

2)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의 모호성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이 극히 모호하여 참가국 약속사항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최종사용자의 위협과 지위에 관한 결정은 각각의 경우 적절한 자제(restraint)의 정도 및 의도의 판단기준과 함께 권위적 해석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이 그리고 투명한 검증절차 없이 오로지 열거된 몇 가지 요소에 근거한 참가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15]

또 다른 예로 핵공급국그룹(NSG) 가이드라인의 비확산원칙에 따르면 공급국은 이전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핵 민감품목의 수출승인을 허용한다. 또한 NSG에는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이 있지만 거래금지 국가들의 리스트는 없다. 더욱이 NSG 가이드라인은 수출이 군사용으로 불법 전용될 가능성에 관하여 국가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6]

아울러 국내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들의 수출통제 집행능력이 다를 수 있다. 수출통제를 집행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다.[17]

---

13) Gordon Corera, Joanne J. myers,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 Q. Khan's Nuclear Netw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ptember 7, 2006.

14) Derek Averre, "Export Controls and the Global Market: The Southern Vector in Russia's Arms Exports," T*he Monitor: Nonproliferation, Demilitarization and Arms Control,* Vol. 3, No. 1, Winter 1997, pp.1-7.

15) Daniel H. Joyner, "Restructuring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System",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 9, No. 2, 2004, p.188.

16) Michael Beck, "Reforming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7, No. 2, Summer 2000, p.95.

17) Michael Beck, "Reforming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7, No. 2, Summer 2000, p.95.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기술변화와 확산에 대한 수출통제의 문제점

수출통제가 급속한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기술의 발전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시장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둘째,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가속화와 기술혁신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정책대응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18] 셋째, 기술의 변화성이다. 이제 민간용과 군사용 기술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넷째,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to Technology)이 전통적인 통제 및 감시방법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수출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인적이동의 통제이다.

예를 들면 민감한 군사 및 WMD 관련 분야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WMD와 미사일 획득을 원하는 국가 및 단체들의 금전적 유혹을 받아 이동하는 일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19]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보편성 결여

'UNSCR 1540호'에 의해 모든 국가에게 수출통제 이행과 집행이 의무화되었지만 실제 이행하는 국가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공급국그룹(NSG)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20여개 국가들이 이미 단·중거리 미사일과 개발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불참하고 있다.

또한 자체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국, 이집트, 인도 , 이란 , 미얀마, 북한, 시리아,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 14개국은 아직 호주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20]

5) 참가국 상호간 정보공유의 불충분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참가국들에게 수출허가를 승인 또는 거부한 사실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투명성의 결여로 인하여 다른 참가국이 거부한 품목을 수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21]

핵공급국그룹(NSG) 참가국의 상당수는 수출거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또한

---

18) Michael D. Beck et al., "*To Supply or To Den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11.

19) Jing-Dong Yuan, "The Future of Export Controls: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Nonproliferation," *International Politics,* Vol. 39, June 2002, pp.140-141.

20) *Ibid.*, p.139.

21) Seema Gahlaut et al., "Roadmap to Reform: Creating a New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The University of Georgia, October 2004, pp.1-28.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체제 참가국들은 체제에서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국내법에 편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22]

3. 비확산규범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1) 비확산체제의 규범강화

(1) 핵확산 통제강화를 위한 조약 개정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NPT에 핵비보유국(NNWS)의 핵무기 개발·수령 및 지원요청 등의 금지 뿐 아니라 핵보유국(NWS)도 그에 상응한 핵 폐기와 IAEA의 사찰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핵무기의 사용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정신 및 인도법 등 기타 국제법에 반할 뿐 아니라 무차별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인류와 문명에 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하루속히 발효시켜야 한다.[23]

(2) 미사일 비확산 조약 제정 및 검증기구 설립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탄도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국제협정이 없으며, 상당한 보편성을 갖춘 '헤이그행동규범'(HCOC)이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약속문서에 불과하고,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이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24] 따라서 HCOC 와 MTCR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탄도미사일의 효과적인 비확산을 위해서는 MTCR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제협상을 통해 NPT · CWC · BWC와 유사한 형태로 탄도미사일의 개발 · 생산 · 폐기 · 이전 등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25]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기능 확대

'UNSCR 1540호'의 예처럼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국가

22) Michael Beck and Seema Gahlaut, "Creating a New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Arms Control Today,* Vol. 33, April 2003, pp.1-17.

23) Thomas Lehrman and Justin Muzinich, "Nuclear-free sea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5, 2009, p.6.

24) Ian R. Kenyon et al., "Missile Proliferation and Defences: Problems and Prospects", *CNS Occasional Paper*, No. 7, July 2001, p.22.

25) Michael Barletta and Amy Sands, eds., "Nonproliferation Regimes At Risk," *CNS Occasional Paper,* No.3, November 1999, pp.1-46.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 이행과 집행이 강제된다.

대북제재 결의인 'UNSCR 1874호'의 예처럼 공해상에서 WMD,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에 대하여 기국의 동의하에 임검 및 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확산방지구상(PSI) 저지활동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관련 조약이 없거나 기존 조약과 다자수출통제체제가 대처하기에 미흡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해결책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 및 제재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비확산체제의 보편성 개선

국제비확산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WMD,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보유, 생산 국가 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CWC의 경우는 화학산업의 참여를 통해 협약이행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 개선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WMD를 보유 또는 개발하는 국가들을 비확산조약에 편입 시켜야 한다.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 파키스탄 · 이스라엘 · 북한의 NPT 가입, 시리아 · 이집트 · 북한 · 소말리아 및 앙골라의 CWC 및 BWC의 가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 · 인도 · 파키스탄 · 남아공 · 말레이시아 등을 PSI에 참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6]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다자체제가 폐쇄적인 선진국 그룹이고 기술무역을 카르텔(cartel) 또는 과점(oligopoly) 형태로 제한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상업적 경쟁국의 출현을 방지한다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27]

3) 검증체제 구축 및 강화

국가안보와 같이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는 조약당사국이 그 약속을 위반하지 않고 약속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별한 보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검증(Verification)의 필요성이 대두된다.[28]

검증에는 중요한 신뢰구축의 기능도 있다. 조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든지 또 금지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을 통하여 비확산 조치의 실행가능성

26) 市川そみ子, "大量破壞兵器の不擴散と國連安保理の役割", 國際問題, 第p570号, 2008. 4, pp.61-62.
27) Andrew Latham and Brian Bow,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Bridging the North-South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Vol. 53, No. 3, Summer 1998, pp.465-486.
28) 淺田正彦 譯, "軍縮條約ハソドブック", 日本評論社, 1994, p.187.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을 구축함으로써 당사국에게 자국의 국익이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29]

Ⅴ.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 동안 수출통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통제의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때 미흡한 점이 있다. 우리기업의 위반사실이 국제통제 체제로부터 지적이 되면 우리정부가 제재를 막아줄 방법이 없으므로 평소 철저히 준수하는게 최선이다.

1.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자서류 처리방식 도입[30]

기업요구에 따라 HS를 기반으로 전략물자 통제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을 기반으로 판정도구를 제공한 점은 수출통제에 익숙치 않은 기업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제품에 대한 HS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소프트웨어나 기술은 외관상 속성을 식별할 수 없어서 정확한 HS로 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통제번호를 찾아서 판정해야할 물자나 기술과 대조하는 일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편리한 도구이지만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 전략물자 불법수출입에 대한 관리

수출통제는 기업이 성실히 판정하고 준수할 때 기업의 이행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전략물자임에도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여 사전판정을 받아서 비해당제품으로 자유스럽게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는 전자서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관공무원이 전략물자를 식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전략물자를 판정과정에서 비해당인 것처럼 속이거나 판정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물자처럼 수출할 때 세관이나 수출허가기관이 탐지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

---

29) *Ibid.*, p.188.

30) Shim, Soung-Kun, "*A Study on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System of Korean Export Control*", Department of Foreign Trad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8.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통관단계에서 확인 검색이 시행될 수 없다면 수출허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자율준수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이행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3.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조직의 정비

한국은 외국에 비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에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관이 분산될 경우 유사한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요인이 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출통제허가를 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기관인 관세청의 수출통제 전문인력 및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수출통제 위반품목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수출통제품목 판정 전문가와 수출통제제도 전문가가 부족하여 전문가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제기준은 국제수출통제리스트와 전 세계 모든 나라 수입자에게 동일한 허가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국가별로 품목별 통제수준, 허가 요건, 허가면제, 허가불필요 등 다양한 메트릭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통제하는 행정기관은 운영하기 어렵지만, 이행해야하는 기업은 예측가능성, 투명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신뢰성이 높고 수출통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그룹의 경우에는 전략물자도 허가를 면제해주고, 우려가 높은 국가는 수입 거래자리스트를 차별화해서 적절한 수순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장관계가 높은 수단,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통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홍보·교육의 체계화로 기업의 인식전환

기업의 인식전환과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정도는 극히 일부 기업만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국제테러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수출통제체제가 매우 강화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만일 허가절차 없이 전략물자가 수출된 경우,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되어 국제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내생산 전략물자가 생산기업의 의도와 달리 불법 수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 전략물자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기업들에 사전에 인지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5. 기업의 자율통제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노력 필요

기업은 더 이상 수출통제를 비용으로 간주하지 말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출통제 선진국의 경우, 수출통제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보지 않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기업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의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공고는 국제 안보질서의 목적에 따라 수출통제체제별로 구성되었으나, 기업은 필요한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발생업무순서에 따라 사전판정, 수출허가, 수입증명서, 자율준수체제로 편제, 수요자 편의위주로 개편하였다.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에 자사제품이 속한다 할지라도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기술명세도 이해하기 어려워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착안점을 모아서 자율준수제도로 보급,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31]

Ⅵ. 결 론

9.11 테러이후 각국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다자간 국제규범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중의 하나는 WMD와 미사일의 확산이다.

다자간 수출통제 규범은 신사협정(soft law)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없고 이행검증장치와 제재수단이 없다. 따라서 현행 다자체제하에서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국은 각 다자체제의 합의된 통제지침에 따라 자국의 법령에 구체적인 통제품목과 대상지역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UNSCR 1540호가 요구하는 통제품목의 환적, 중개, 재수출, 운송, 최종사

31) 박만, “주요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6. 9, pp.19-20.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자 및 경유를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 등의 형벌과 수출입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각국의 자발적인 충분한 이행 및 집행노력이 필요하다.

수출통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수출통제의 효과가 좌우된다. 즉,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핵무기 및 미사일관련제품은 수출통제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생·화학무기는 전용이 쉬워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국제사회가 통제하여도 자체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범용성(dual use) 기술은 더욱 통제하기가 어렵다. 기술수준이 낮은 품목은 생산국이 많아 통제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통제체제가 느슨해지면 수출통제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다.

수출통제의 결과를 보면 수출통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방해 내지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다. 수출통제로 인해 우려국가에 대한 확산방지의 규범의식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이행방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자서류 처리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전략물자 불법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와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율통제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출통제의 이행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출통제 이행준수 향상을 위한 시스템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법령개정, 제도를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정·허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부적격거래자(Denial List)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통제의 불가피성과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준수체제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경제적 이익추구가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 효율적인 수출입통제는 안보이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우리기업의 이행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 고 문 헌

박 만, “주요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6. 9, pp.19-20

조성균, 2007, “무역대국의 선결 과제, 수출통제 제도이행: 산업자원부 200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안보통상연구」, 제1권 1호, 한국안보통상학회: 145~146

전략물자관리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2009, pp.3~162

전략물자관리원, “2010 연례보고서”, 2010, pp57~91

Andreas F. Lowenfeld,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710-741.

Andrew Latham and Brian Bow,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Bridging the North-South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Vol. 53, No. 3, Summer 1998, pp.465-486.

Charles Lipson, "Why Are Some International Agreement In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4, Autumn, 1991, p.500.

Daniel H. Joyner, “Restructuring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System”,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 9, No. 2, 2004, pp.181-211.

Derek Averre, "Export Controls and the Global Market: The Southern Vector in Russia's Arms Exports," T*he Monitor: Nonproliferation, Demilitarization and Arms Control,* Vol. 3, No. 1, Winter 1997, pp.1-7.

Gordon Corera, Joanne J. myers,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 Q. Khan's Nuclear Netw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ptember 7, 2006.

Gordon M. Burk et al. *International Handbook on Chemical Weapons Proliferation,* Greenwood Press, 1991, pp.540-541.

Houte H., "Treaty Protection and Economic Sanctions", *Revue Belge de droit international* 34, Vol. 18, 1984-85, p.46.

Ian R. Kenyon et al., "Missile Proliferation and Defences: Problems and Prospects", *CNS Occasional Paper*, No. 7, July 2001, p.22.

Jing-Dong Yuan, "The Future of Export Controls: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Nonproliferation," *International Politics,* Vol. 39, June 2002, pp.139-141.

John H. Jackson,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and Non-tariff Barriers," *Michigan Journal of*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Law, Vol. 10, Winter 1989, pp.207-224.

Joshua Masters, "Nuclear Proliferation: The Role and Regulation of Corporation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6, No. 3, November 2009, pp.349-350.

Kenneth W. Abbott and Duncan Snidal, "Hard and Soft Law in Internation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Summer 2000, pp.421-456.

Bothe M. et al., *The New Chemical Convention -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p.468.

Mary Beth Kikitin et al., CRS Peport for Congress RL31559, *Proliferation Control Regimes : Background and Status*, January 31, 2008, p.4.

Michael Barletta and Amy Sands, eds., "Nonproliferation Regimes At Risk," *CNS Occasional Paper,* No.3, November 1999, pp.1-46.

Michael Beck, "Reforming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7, No. 2, Summer 2000, pp.91-103.

Michael Beck and Seema Gahlaut, "Creating a New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Arms Control Today,* Vol. 33, April 2003, pp.1-17.

Michael D. Beck et al., *To Supply or To Den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11.

Nathan E. Busch and Daniel H. Joyer,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Policy",*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9, pp.1-181.

Oscar Schachter, "The twilight Existence of Non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1, April 1977, pp.296-300.

Seema Gahlaut et al., "Roadmap to Reform: Creating a New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The University of Georgia, October 2004, pp.1-28.

Seung-Hwan, Choi, "*International Economic Law*", Bubyoungsa, 2006. 9, p.610.

Seung-Hwan, Choi, "*International law aspects of the United States export control against the communist bloc nation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1. 2.

Seung-Hwan, Choi, "The Role and Task of National Securit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1, No. 3, 2006, pp.11-44.

Soo-Yoon, Chang,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Issues and Challenges on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08. 2.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oung-Kun, Shim, "*A Study on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System of Korean Export Control*", Department of Foreign Trad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8.

Soung-Kyun, Cho, "Prerequisite for Successful Trading County,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 Based on ' the 2007 MOCIE Plan'- ",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Vol. 1, No. 1, March 2007, pp.145-170.

Steve H. Kang,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s",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Vol. 1, No. 1, March 2007, pp.103-125.

Steve H. Kang,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 Regimes from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0.

Thomas Lehrman and Justin Muzinich, "Nuclear-free sea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5, 2009, p.6.

KITA, "Export Control", Pakyoungsa, 2006. 8, pp.134-137.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December 2002, p.2.

市川そみ子, "大量破壊兵器の不擴散と國連安保理の役割", 國際問題, 第p570号, 2008. 4.

淺田正彦 譯, "軍縮條約ハソドブック", 日本評論社, 1994, p.187.

(株)東芝輸出管理部, "キャッチオ一ル輸出管理の實現", 日刊工業新聞社, 2005, pp.8-20.

본 논문의 일부내용과 국내대학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함이 확인되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해당논문을 게재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Sang-Ok Lee*

Export control was first triggered b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t US led COCOM in 1949.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NPT in 1969, ZC in 1970, NSG in 1978, AG in 1985, MTCR in 1987, Wassenaar Arrangement(WA) establishment in 1995 with 1990'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ve been made since.

The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been changed from weaponry and parts export control to preventing or blocking weaponry, respective goods and relevant technology from the hand of troubled regions and non-state actors as terrorist groups; and the new concept is described as Nonproliferation Control.

Extent of control items is not only limited to conventional weaponry, but also includ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even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for production, development, usage or storage.

Control items include all items defined by NSG, MTCR, AG, WA, and CMC-Opec.

The 9.11 terror had a strong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Effort to prevent WMD proliferation has now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inter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for nonproliferation law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based on problem and limitation identification along with analysis of nonproliferation law and implementation examples by type.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 key issue in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needs to be effectively managed. Recently,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tests have been criticized globally; and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respective countries as China and South Korea is striving to urge export control in line with the UN resolution.

Key Words : strategic items, export control, nonproliferation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ollege of Social Science, Konkuk University